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부겸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1.4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1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호봉 인정대상이 되는 경력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 및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7만1700원”을 “7만2900원”으로, “7만3400원”을 “7만4500원”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788만7천원”을 “801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65만3천원”을 “879만4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68만5천원”을 “781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96만1천원”을 “910만6천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 및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865만3천 원”을 “879만4천 원”으로, “475만7천 원”을 “483만5천 원”으로, “865만3천 원”을 “879만4천 원”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본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4)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가목4)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자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본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으로 한다.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 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

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

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⑯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⑰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⑱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

가.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
기준액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 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 한다.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 ----- ----- ----- ----- ----.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 항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 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 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 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 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의2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 및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 또 는 제4호----. ----- ----- -----.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
한다)에게는 7만17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
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
만34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
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략)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
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생
략)

②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
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봉
을 책정한다.

③·④ (생략)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생략)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
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

② -----

----- 7만2900원 -----

----- 7
만4500원 -----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
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제11조의4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788만7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865만3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68만5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96만1천원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 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1. -----

----- 801만5천원 -----

--

2. -----

----- 879만4천원 -----

3. -----

781만원

4. -----

910만6천원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

-----.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생략)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략)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865만3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475만7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

2. (현행과 같음)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 및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 -----
-----.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879만4천원-----

----- 483만5천원-----

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u>865만3천원</u>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③ (생략)	----- ----- ----- --- <u>879만4천원</u>-----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523